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개정 및 법령에 명기된 조항을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7조)

나.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해 직위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변경
“균형건설국장”을 “재난업무 담당국장”으로, “재난업무 담당”을 “재난
업무 담당사무관”으로 변경
(안 제7조제1항, 제8조 3항 및 6항)

다.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삭제 및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
~의 규정에 의한 ⇒ 에 따라, ~내지 ⇒ ~부터, 가진 자⇒ 갖춘사람
(안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며 회계직 공무원 및 위원 명칭에 대하여 직위 중심에서 업무중심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명칭의 변경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불편함을 해소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며

-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관련부서인 치수방재과와의 사전협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